

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1. 10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제안이유

제2단계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주민에게 불편·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개선함으로서 주민편의제공 및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법령에 근거없이 행정편의를 위해 생활폐기물 배출자등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. (안제8조)

파주시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환경보호과 ☎ 940-4472
입 안 자	환경보호과장	박 철 순
	청소담당	조 양 휘
	담 당 자	이 명 수

신 · 구조문 대비 표

현행	개정안
제8조(보고 및 검사등) ①시장은 자원 재 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·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	〈 삭제 〉